(參 照)

대구광역시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대한구세과세면제(안)

의 안 번 호	95-24

제출년월일 : 95. 6.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세무과)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 2

2. 제출사유

○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파손된 건축물에 대한 구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함.

3. 구세과세면제내역

○ 동 재해로 인하여 완파, 반파된 건축물로서 재축, 개축, 대수선을 요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안전 진단결과 재축, 개축, 대수선을 요할시 당해 건축 관련 부서의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95년도 재산세, 재산할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한다.

다만, 건축물 피해 보상금 이 외 자력(자비)으로 재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법 제9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 전화 · 기타의 재해"를 말한다.

○ 면제세액(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계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소 방 세	교 육 세	사업소세
계	23	14,416	8,014	2,512	2,295	1,595	0
재 축	2	1,321	781	239	146	155	0
대수선	21	13,095	7,233	2,273	2,149	1,440	0